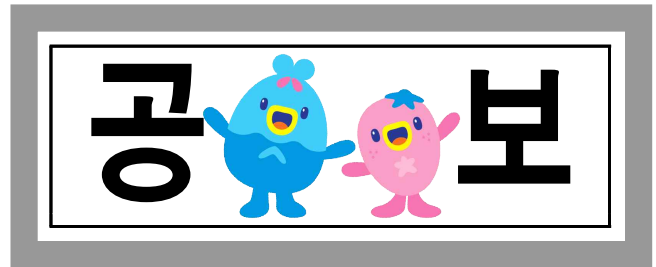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528호 2024년 4월 22일(월)

입법예고

- 속초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

발행 : 시 민 소 통 담 당 관 (전화 : 639-3750, FAX : 639-2799)

속초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「속초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4년 4월 22일

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

2. 제정이유

대설 등 제설작업에 참여한 제설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제설작업 참여자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제설대책 수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시장의 책무, 지원대상, 지원내용(안 제3조 ~ 제5조)

다. 포상(안 제6조)

라. 운영 등(안 제7조)

4. 자치법규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(참조 : 재난대응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

나. 의견제출 및 문의처

1) 주소 : 우)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, 속초시청 재난대응과(방재복구팀)

2) 연락처 : 전화 033-639-1514, FAX 033-639-2970

3) 전자문서 : soredy357@korea.kr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전자문서, 직접방문 등

6. 기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재난대응과 방재복구팀(033-639-1514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강설 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등에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제설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“제설단”이란 강설 시 대형제설차량 진입에 제한을 받는 마을안길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차량, 트랙터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.

② “제설작업”이란 주로 겨울철에 교통안전과 주민 편의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및 주차장 등의 표면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말한다.

③ “제설장비”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, 트랙터 및 제설용 부착형 장비 등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속초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설해의 예방 및 경감 조치에 기여하고 있는 제설단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장이 위촉하는 제설단으로 한다.

제5조(지원내용) 시장은 제설단이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대인·대물 배상보험 가입비
2. 제설작업에 따른 제설장비 유류비 및 수리비

3. 제설단의 식대 및 간식비

4.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설해 예방을 위해 제설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제6조(포상) 시장은 제설작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제설단에게 「속초시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7조(운영 등) 제설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